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 제2항제4호).
- 양식업 허가 관련 인·허가 의제 대상에 「농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(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).
-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1조의2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61조의2는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기획예산처는 현행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등 기존의 법규정¹⁾으로도

1)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61조(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·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·경제적 조사·연구 사업
2.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
3. 양식시설의 자동화,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
4. 양식시설 개선·보완 사업

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고, 현재도 양식장의 소수력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존재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61조의2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호의 내용에 따라 조문 표현을 수정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

-
- 5.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
 - 6.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·보급 사업
 - 7.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
 - 8.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·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64조(양식컨설팅 지원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·기술·재무·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- 1. 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
 - 2.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
 - 3.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·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
 - 4.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66조(보조 등)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